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0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박성훈 · 김성원 · 이달희
이현승 · 김종양 · 이인선
고동진 · 한지아 · 박충권
임이자 · 이상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등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 항로 취항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서울고법은 해운법을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킴.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모두 자국의 무역운송 증진을 위해 해

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조치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 같은 조치를 할 경우 해운은 물론이고 우리 무역 수출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8항 신설 등).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2일”을 “7일”로, “신고인에게”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수리된 협약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약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제29조제2항·제5항, 제30조”를 “제30조”로, “제19조제1항제17호”를 “제19조제1항제14호의 “제21조제3항”은 “제29조제2항·제5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② (생 략)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 은 날부터 <u>2일</u>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u>신고인에게</u> 통지하 여야 한다	③ ----- ----- ----- <u>7일</u> ----- ----- <u>신고인에게 통지하</u> <u>여야 하고, 신고 또는 변경신고</u> <u>가 수리된 경우 그 수리된 협</u> <u>약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u> <u>통보하여야</u>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대하 여는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u> <u>에 관한 법률</u> 」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u><신 설></u>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약의 내용이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u> <u>한 법률</u> 」에 저촉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